

임신 · 출산

(영유아 모성사업)



Contents

I. 출산 준비 지원

- 예비부모 건강관리 안내
- 남녀 임신준비 지원(예비부부 건강검진)
- 한의약 난임 지원 안내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II.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부 건강관리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산후조리비용 지원

III.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지원

- 국가 예방접종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0세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 모유수유 엄마 젖 먹이기



예비 부모 건강관리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지식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및 식이조절을 통한 적정 체중관리가 필요.
임신은 여성의 노력 뿐 아니라 남성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내 용
금주	음주가 난임 발생 및 유산율을 높이고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	흡연이 태아의 신경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난임 및 유산과 자궁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며, 태아의 기형 중 구순 · 구개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ADHD 유발할 수 있음.
엽산 섭취	임신 준비전부터 적정량의 엽산제를 복용하면 태아의 신경계 기형을 예방합니다. - 엽산은 비타민 B9으로 체내의 세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비타민으로 임신초기에 기형을 예방하는데 중요함.
만성질환 치료 중 임신계획	임신시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은 당뇨, 갑상선기능 저하,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 태아의 자연유산, 기형아발생, 조산, 저체중아, 사산 관련 있음. - 임신전 미리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임신 가능 상태 확인 필요.
우울증 치료 중 임신계획	임신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크며 자연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 우울증은 슬픔의 감정이 지속적이고 불안, 안절부절, 집중력저하가 동반됨. - 치료약물(주로 SSRIs계) 중 파록세틴은 심장기형율을 높이므로 임신중기 정밀 초음파 확인이 필요함. - 지속적 폐성 고혈압 발생증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에서의 출산을 권장함. - 임신 말기 치료약물을 복용할 시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산 후 모유수유 적극 권장.



남녀 임신준비 지원(예비부부 건강검진)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관내구민 및 구로구 주소를 둔 직장인)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09:00 ~ 11:00, 오후 13:00 ~ 17:00)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구로구 주소로 온라인신청후 보건소 방문신청
준비사항	검진 전 반드시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지원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요인평가 설문 엽산제 3개월분 제공(남녀 모두) 건강검진(풍진항체, B형간염항체,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성병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폐결핵 검사,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 남성검진(정액검사 등) : 검진의뢰서 발급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 검진비 지급)
구비서류	관내 구민 및 직장을 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장소	보건소 1층 모성실
상담전화	☎ 02-860-2457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 원하는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0. 7. 27 ~ 선착순 접수중
지원횟수	1인당 최대2회 (연1회)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첩약, 상담, 프로그램 등) ※관찰기관 1~2개월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3개월:1,324,800)지원 중 ※첩약비용의 90%(약 1,192,320) 지원 치료비용의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지원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진단서 원본(난임 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전선별결과지: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후 출력(남녀각각 출력) 검사결과지: (공통) CBC, LFT, FBS, BUN/CRE, B형간염, 소변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 유효기간없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경우 5번 생략 가능
상담전화	☎ 02-860-2275, 325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구분	내 용
지원 신청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 [서울형난임]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횡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모두 합산
지원범위	[정부지원] 시술종류와 횡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서울형난임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 3회, 회당 최대 180만원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정부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총 17회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횡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서울형난임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3회
지원절차	[정부지원] 보건소 방문신청 및 서류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통지서 의료기관 제출 → 난임시술 동안 한도내 의료기관 차감 후 지원 →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청구 → 시술비 의료기관에 지급 [서울형난임 지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통해 온라인 신청 → 보건소 검토 후 승인 → 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의료기관 제출 → 이후 정부지원과 동일 [공통] 매 신청시마다 자격 요건 확인.

구분	내 용
구비서류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진단서 제출) ※ 체외 및 인공 시술 각각 시술 1차 신청 제출로 최종 지원시까지 같음 ※ 서울형 난임 최초 신청시에도 난임 진단서 제출 요함. 건강보험카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4번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혼 신청자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모두 한국 국적, 1년 이상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 - 시술동의서(남녀 모두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남녀 각각 1부씩 부부 모두 한국 국적, 등본상 1년이상 거주했음을 입증 불가시 - 1년이상 사실혼 확인 가능한 공문서 -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이상),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보증인의 경우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불가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시술동의서(남녀 모두 동의서 작성) (내국인 대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외국인 대상)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지원내용	[정부지원] 주민등록상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서울형난임 지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상담전화	☎ 02-860-2275, 3285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산전 관리 (☎02-860-2457)

구로구 보건소 모성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시~1시)

임신주수	내 용
임신시~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초기검사(빈혈,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간기능, 소변검사 등) ▶ 엽산제 지원 ▶ 모자보건사업 안내
16주~18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 기형아 2차 퀵드검사(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주에 전화로 사전예약 -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 - 준비사항 : 3일 이내(최대1주일 이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후 정확한 초음파 검사일자, 임신주수, 체중 확인 후 내소 - 검사시간 : 검사시간 예약 가능 - 검사결과 확인 : 1주일 뒤 전화로 확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12월의 경우 12월 첫째 주까지만 검사 가능 ▶ 산모우울선별검사 및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상담
16주~4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분제 지원 : 임신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제공
출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축기 대여 : 필요한 날 3일전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예약가능, 평일만 대여가능, 유축세트 제공, 대여기간 1개월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유축기 대여 등 일부 서비스는 구로구민만 가능

① 임신 전·후 우울증검사(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내 용 : 임부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우울증) 진단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 장 소 : 보건소 1층 마음건강상담소 및 모성실
- 문의 및 신청 :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팀(☎02-861-2284~6)

②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02-860-2457)

- 대 상 : 36주 이상 임부 및 수유부
- 내 용 : 모유수유 자세교정 및 1:1 상담
- 방 법 :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 예약 신청

③ 출산준비교실(☎02-860-3285)

- 대 상 : 임산부
- 내 용 : 임산부건강교실, 부부출산교육, 모유수유교실
- 방 법 :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 예약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2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p>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은 제외)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p> <p>*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p>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지원적격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지원비 입금(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구비서류	<p>[신청자 제출, 공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수, 진단서상 입·퇴원 날짜 명시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생략 가능) 2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3~4번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5 입금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p>[해당자 제출,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8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9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상담전화	☎ 02-860-2275, 328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8세이하로,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기간	분만 전까지
지원범위	①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태기불안(O20, O60.0), 산후통(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첩약 조제 지원 ②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임신 확인]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서비스신청] 임신확인서 및 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바우처 생성] → [카드발급 및 수령] → [바우처 사용]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상담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분	내용
대상	① 국가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② 서울시 지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출산가정
예외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둘째아 출산가정 ② 소득기준없음 : 쌍생아, 셋째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미혼모 시설 입소 중인 산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출산 순위별, 소득별, 제공 기간별 서비스 금액 및 본인부담금 상이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및 가사활동 지원(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신청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 상담 및 예약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보건소 임부 등록된 산모는 불필요),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수급자증, 장애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①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 받은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계약 ② 계약서는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일에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함 ③ 본인부담금은 계약 완료 후 제공기관에 납부 ④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확인, 이용자 준수(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요청, 휴게시간 1일 1시간 반드시 보장 등)
상담전화	☎ 02-860-3285, 2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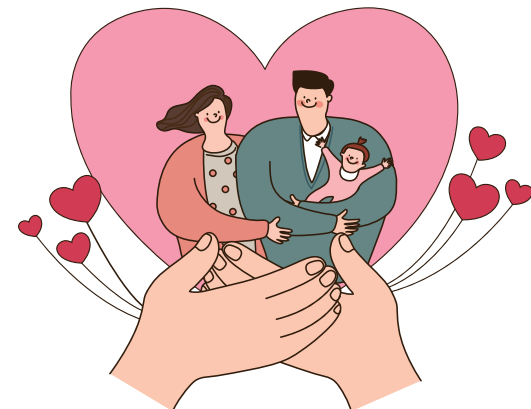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구분	내용
대상	가정방문에 동의한 관내 모든 출산가정 (고위험 가정의 경우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지속적 방문)
신청기간	임신 ~ 출산 후 4주 이내
본인부담금	무료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성실에서 방문 신청(등록평가지 작성)
회수	<p>보편방문 출산 후 4주 이내 1회 방문 지속방문 고위험 가정의 경우 출산 전 부터 ~ 만2세까지 지속적 방문 (최소 25회 방문)</p> <p>1~8번 중 한가지에 해당하고 9번에도 해당하는 임신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23세 이하 2 임신 20주 이후 산전관리 시작한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 6 우울 7 임신 중 음주 8 현재 흡연 9 사회심리 문항
지원내용	<p>전문교육을 받은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부 등록과 평가(가족특성, 신체상태, 사회정서 상태) 2 보편적 가정방문(산모건강, 신생아건강, 양육역량 파악) 3 지속적 가정방문(파트너십 형성, 건강발달 향상, 양육역량 강화) 4 사업연계(보건소, 구청,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등) 5 소그룹 엄마 모임 프로그램 운영
상담전화	☎ 02-860-2611, 2612



산후조리비용 지원

구분	내용
대상	<p>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결혼이민자 산모 포함)</p> <p>※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함.</p>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p>소득관계 없이 정액 30만원 지원</p> <p>※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정액 30만원 지원</p>
지원절차	<p>출생 신고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 적격여부 심사</p> <p>→ 지원적격자 확정시 산모 은행계좌로 지원비 입금(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p>
구비서류	<p>신분증</p> <p>통장 사본(산모 및 대리인)</p> <p>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p>
상담전화	☎ 02-860-3306





국가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17종) 안내 :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 대상 백신 : 국가 예방접종(17종)

접종종류	내 용	
BCG(결핵)	1개월미만(신생아)	
B형 간염	0개월, 1개월, 6개월	
A형 간염	1차(12개월~23개월), 2차(18개월~35개월)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DTaP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2, 4, 6개월, 15~18개월, 만4세~6세	
폴리오(소아마비)	2, 4, 6개월, 만4세~6세	
DTaP-IPV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2, 4, 6개월, 만4세~6세	
DTap-IPV/Hib	2, 4, 6개월	
MMR(홍역, 볼거리, 풍진)	12개월~15개월, 만4세~6세	
일본뇌염 (사백신)	기본접종	생후 1년에 1주간격 2회,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1회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일본뇌염(생백신)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수두	12개월~15개월	
Td(티디), Tdap	만11세~만12세	
Hib(뇌수막염), 폐렴	2, 4, 6개월, 만12~15개월	
HPV(자궁경부암)	만 12~13세 여아(6개월 간격 2회 접종)	

- 접종비 : 전액지원
- 위탁의료기관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확인
 - ※ 준비물품 : 아기수첩, 등본(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외국인증, 여권), 자궁경부암 : 보호자 동반
 - ※ 기타예방접종 :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경피용 BCG,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 ※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안내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 기타 문의사항 ☎02-860-2432, 2435



영유아 건강검진

아이성장과 발달관리,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챙기세요!

구 분	내 용																			
검진대상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영유아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발송 - 전국 모든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www.nhic.or.kr																			
검진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검진시기</th> <th>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차 (4~6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td> </tr> <tr> <td>2차 (9~12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td> </tr> <tr> <td rowspan="2">3차 (18~24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td> </tr> <tr> <td>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td> </tr> <tr> <td>4차 (30~36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td> </tr> <tr> <td rowspan="2">5차 (42~48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td> </tr> <tr> <td>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td> </tr> <tr> <td rowspan="2">6차 (54~60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td> </tr> <tr> <td>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td> </tr> <tr> <td>7차 (66~71개월)</td> <td>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안전사고, 영양, 간접흡연</td> </tr> </tbody> </table>	검진시기	항목	1차 (4~6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	2차 (9~12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3차 (18~24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4차 (30~36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5차 (42~48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54~60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66~71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안전사고, 영양, 간접흡연
	검진시기	항목																		
	1차 (4~6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																		
	2차 (9~12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3차 (18~24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4차 (30~36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5차 (42~48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54~60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 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66~71개월)	건강 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안전사고, 영양, 간접흡연																			
결과통보	영유아 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경우에 한함. -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관련 상담 문의 ☎ 02-860-2421																			
비용	본인부담금 없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구분	내용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여부 심사 → 지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전화	☎ 02-860-2421



0세아 의료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12개월 미만)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가족수는 등본과 건강보험에 '동시에' 기재된 인원만 해당, 출생아 포함)
지원내용	①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원외 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은 제외) ②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③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최고 70만원 지원 ④ 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에서 지원함, 중복 지원불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암 의료비 지원 등)
신청기한	병 · 의원 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지원 적격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지원비 입금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근월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월 납부확인서 입금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문의전화	☎ 02-860-3285, 227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분	내용
대상	<p>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예외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p>
지원요건	<p>[미숙아 의료비]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p> <p>[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20.8.31이전출생환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20.9.1이후 출생 환아부터 적용)</p>
지원범위	<p>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p>
지원내용	<p>[미숙아 의료비] 출생 시 몸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비는 1회에 한함, 재입원 지원 불가</p> <p>[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회 이상 입 ·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6개월 이내 수술비만 지원), 최대 500만원 -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p>
신청기한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여부 심사 → 지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신청서 1부(내소시 작성),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 또는 입 · 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 확인서는 행정정보 동의시 제출 생략, 등본이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일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문의전화	☎ 02-860-2275, 261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구분	내용
대상 및 소득요건 판정기준	<p>[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p> <p>[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p>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p>선별 검사</p> <p>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 불가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지원.</p>
	<p>확진 검사</p> <p>확진 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이 질환 확진시 지원(7만원 한도)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p>
	<p>환아 관리</p> <p>-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는 의료비 지원, 최대 연간 25만원)</p>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여부 심사 → 지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p>신청자 제출 (공동)</p> <p>검사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지원 신청서(내소시 작성) *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 확인서는 행정정보 동의시 제출 생략, * 등본이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p>
	<p>해당자 제출 (추가)</p> <p>(확진검사비)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p>
	<p>환아 등록</p> <p>[최초 신청, 공동] 진단서 및 등본 각 1부 - 진단서에 분유량,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크론병, 추가] 진료 확인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추가]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p>
문의전화	☎ 02-860-2275, 2611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구분	내용
검진대상	<p>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p>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p>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지원.</p>
	<p>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환아 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p>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여부 심사 → 지원 확정시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p>신청자 제출 (공동) 신청서(내소시 작성) 검사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통장사본 *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 확인서는 행정정보 동의시 제출 생략, 등본이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p>
	<p>해당자 제출 (추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p>
	<p>환아 등록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각 1부</p>
문의전화	☎ 02-860-2275, 2611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구분	내용
대상	<p>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자격보유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둘째아)가구 및 장애인가구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허용 -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입양가정, 부자 · 조손가정 등</p>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내용	<p>기저귀 : 영아 1인당 월 64,000원 바우처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150,000원 바우처 지원</p>
지원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보건소,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2 지원 대상으로 결정통보 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3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
구비서류	<p>신분증 신청서(내소시 작성) *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 확인서는 행정정보 동의시 제출 생략, 필요시 휴직증명서, 장애증명서, 수급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 질환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추가 구비서류</p>
문의전화	☎ 02-860-3285, 2275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내용
대상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1세 ~만 6세(만 72개월 미만)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기준 3가지 모두 충족시 대상자 선정] ①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 출산 · 수유부, 영 · 유아(66개월 미만) ②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시 ③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기준표 구로구 홈페이지 확인 ※ 위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혜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함. ※ 영양교육 미 참석자는 자격에서 탈락됨.
신청방법	내소 및 전화 접수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이상,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가정방문(가구별 맞춤형 영양상담, 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에 따라 식품패키지 월 1~2회 공급)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6개월 간격 재평가)
수혜 대상자 임무	① 영양교육 및 평가참여(미 참여시 자격 탈락) ② 자격기간 6개월 간격 재심사시 영양상태향상, 소득기준 초과시 대상자 제외 ③ 소득, 주소, 생리학적 기준 변경시 신고 ④ 보충식품 수령시 확인(식품종류 및 양, 신선도) ⑤ 보충식품의 적절한 활용 및 식습관 개선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문의전화	☎ 02-860-3221, 3236



모유수유에 관하여

구분	내용											
초유의 신비	초유란 분만 후 수일간 분비되는 진하고 끈끈한 노란액의 액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유의 단백질은 쉽게 소화 흡수됩니다. • 면역기능 풍부하여 질병의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 장운동을 촉진시켜 태변의 배출을 유도합니다. • 황달을 예방합니다. 											
모유수유 장점	아기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 형성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지능 발달에 유리, 정서적 이득 • 임파종, 백혈병, 성인병 예방, 과체중과 비만 예방 	엄마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수축으로 산후 출혈감소 • 자궁퇴축 촉진 • 산후우울증 예방 • 체중감소 • 유방암, 난소암 발생감소 										
모유수유 쉽게 성공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툰니다.) • 출산 병원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출산 직후부터 7일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수유시 쉽게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빨리 젖을 물리세요. (출산 후 30분~1시간이 아이가 젖 빠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이때 물리면 모유양이 많아집니다.) • 모자동실을 이용하세요. (배고픔 신호를 보내면 즉시 먹여주세요) • 올바른 자세로 모유를 먹이세요. (아기와 엄마 배를 마주하고 아기얼굴과 엄마 유방이 마주해야 합니다.) • 젖꼭지 주변까지 물어야 합니다. (아기의 코와 턱이 엄마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깥 당겨 안습니다.) • 자주 젖을 빨려야 모유 양이 늘어납니다. (분유를 먹이느라 모유를 덜 빨면 자연히 모유는 줄어듭니다.) • 유방이 붓치고 아프면 더 자주 젖을 빨립니다. (유방에 차가운 습포로 통증을 줄이세요) • 6개월까지 모유만 먹고 24개월까지 젖먹이기를 계속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과 병행합니다.) 											
모유 양이 많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유만 섭취하고 후유까지 먹지 못해 묽고 푸른 변을 자주보고,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짧게 먹고 잠든 경우 다음 수유 때 먼저 먹은 젖을 다시 물려주고 반대쪽은 불편하지 않게 유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모유 보관하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냉장실</th> <th>냉동실</th> </tr> </thead> <tbody> <tr> <td>금방 짜낸 모유</td> <td>72시간(3일)</td> <td>3개월</td> </tr> <tr> <td>해동시킨 모유</td> <td>24시간</td> <td>다시 냉동시키지 않것</td> </tr> </tbody> </table>		냉장실	냉동실	금방 짜낸 모유	72시간(3일)	3개월	해동시킨 모유	24시간	다시 냉동시키지 않것	
	냉장실	냉동실										
금방 짜낸 모유	72시간(3일)	3개월										
해동시킨 모유	24시간	다시 냉동시키지 않것										
모유수유 언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후 30분 이내부터 두돌 혹은 그 이후(아기가 원할 때)까지 먹입니다. • 모유성분은 2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면역성분은 증가합니다. 											

구로구보건소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 ①호선 구로역 1번출구 NC 아웃렛 신구로점 6613, 구로09 버스 이용
- ②호선 신도림역 2번출구 에서 5619, 영등포 09, 6511, 6411 버스 이용
- ⑦호선 대림역 하차 4번 출구에서 도보 10~15분 소요



버스 이용시

- 6613, 구로 09 보건소 바로 앞 정류장에서 하차
 - 5619, 6511, 영등포 09 구로보건소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소요
 - 503, 571, 5615, 5622, 5712, 5714, 6512, 6612
- NC 아웃렛 신구로점 하차 후 6613, 구로 09환승
구로 10, 구로11 영림중학교 하차 후 도보 5분 소요

GRO 구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
TEL. 02)860-2114, 2127~9
www.guro.go.kr/health/index.do